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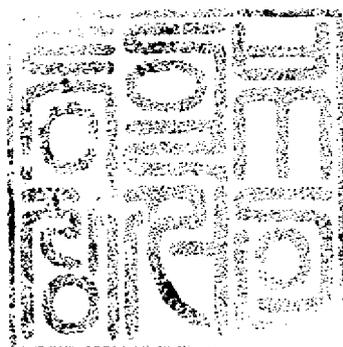
198.12.17

42.1.2

— < 북한 최고인민회의 > —

제 10 기 제 1 차회의 결과

1998. 9. 6



통 일 부
(정보분석실)

1. 일반사항

○ 회의 일시·장소 : '98.9.5(토), 만수대의사당

○ 참석 : 대의원 687명중 김정일 등 680명 참석

○ 의 안

- ①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 ②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 ③ 국가지도기관 선거

※ 김정일의 연설은 없었으며, 회의도중 제9기 제1차회의('90.5)시 김일성의 시정연설("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을 녹음으로 청취

2. 주요결정사항

가. 첫째의안 (헌법수정·보충)

(1) 주요 수정사항(권력구조 개편)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

- 종전의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의 대부분을 상임위원회로 이관

- 상임위원장이 국가대표, 외교권 행사

○ 국가주석 : 폐지

1. 일반사항

○ 회의 일시·장소 : '98.9.5(토), 만수대의사당

○ 참석 : 대의원 687명중 김정일 등 680명 참석

○ 의 안

- ①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 ②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 ③ 국가지도기관 선거

※ 김정일의 연설은 없었으며, 회의도중 제9기 제1차회의('90.5)시 김일성의 시정연설("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을 녹음으로 청취

2. 주요결정사항

가. 첫째의안 (헌법수정·보충)

(1) 주요 수정사항(권력구조 개편)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

- 종전의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의 대부분을 상임위원회로 이관

- 상임위원장이 국가대표, 외교권 행사

○ 국가주석 : 폐지

- 국방위원회 : 지위 및 권한 강화
 - 「최고군사지도기관」기능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기능 추가
 - 국방부문 중앙기관 설치 및 폐지 권한 신설
- 중앙인민위원회 : 폐지
- 정무원 : 「내각」으로 개편
 - 종전의 「행정적 집행기관」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권한 추가
 - 내각총리는 정부대표
 - 각 부문별 「위원회」·「부」를 「省」으로, 「위원장」 및 「부장」을 「相」으로 각각 개칭

(2) 주요 보충사항

- 「서문」 신설
 -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
 -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
 -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
- ※ “김일성=영원한 주석”을 주석직 폐지의 논리로 시사

(3) 기타 수정·보충사항

- 지방행정체제를 일원화
 -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흡수, 내각의 결정사항 집행

- 경제여건 변화현실을 제도에 일부 수용
 -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개념도입
 - 개인소유 허용범위 확대
 - 특허권 보장
 - 대외무역 주체에 대한 국가감독권 삭제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 장려
 - 주민경제 생활과 관련 거주·여행 자유권 규정 등
- ※ 개정헌법 구성은 「서문, 7장 166조」(구헌법 : 7장 171조)

나. 둘째의안 (국방위원장 추대) : 김정일을 재추대

※ 9.5 21:00 중대방송으로 발표

다. 세째의안 (국가지도기관 선거)

(1) 국방위원회

- 위원장 : 김정일
- 제1부위원장 : 조명록
- 부위원장(2인) : 김일철, 이용무
- 위원(6인) : 김영춘,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2) 최고인민회의

< 의장단 >

- 의장 : 최태복
- 부의장(2인) : 장철, 여원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위원장 : 김영남
- 부위원장(2인) : 양형섭, 김용대
- 서기장 : 김윤혁
- 명예부위원장(4인) :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전문섭
- 위원(11인) : 유미영, 강영섭, 이길송, 이철봉, 이일환,
승상섭, 천연옥, 엄순길, 박태화, 이광호, 태형철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

- 위원장 : 김국태
- 위원(6인) : 현철해, 채문덕, 이용복, 김창현, 정문산, 우두태

< 법제위원회 >

- 위원장 : 백학립
- 위원(6인) : 최영립, 김병률, 최원익, 박관오, 박선호, 최수현

< 예산위원회 >

- 위원장 : 한성룡
- 위원(6인) : 이태현, 홍서헌, 현려진, 홍영길, 조혜숙, 이주용

※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폐지

(3) 중앙검찰소 소장 : 최영립

(4) 중앙재판소 소장 : 김병률

(5) 내 각(31개부서 : 1위원회, 26성, 1원, 1은행, 2국)

총리 : 홍성남

부총리(2인) : 조창덕, 곽범기

외무상 : 백남순

사회안전상 : 백학림

국가계획위원장 : 박남기

전기석탄공업상 : 신태록

채취공업상 : 길성남

금속기계공업상 : 전승훈

건설건재공업상 : 조윤희

철도상 : 김용삼

육해운상 : 김영일

농업상 : 이하섭

화학공업상 : 박봉주

경공업상 : 이연수

무역상 : 강정모

임업상 : 이상무

수산상 : 이성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 :

최종건

국가건설감독상 : 배달준

상업상 : 이용선

수매양정상 : 백창룡

교육상 : 최기룡

체신상 : 이금범

문화상 : 최재현

재정상 : 임경숙

노동상 : 이원일

보건상 : 김수학

체육상 : 박명철

국가검열상 : 김희선

과학원장 : 이광호

중앙은행 총재 : 정성택

중앙통계국장 : 김창수

사무국장 : 정문산

3. 내용분석

가. 권력구조 개편

(1) 개편의 중점은 「국가주석」제 폐지

- 종전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 이관
 - 「국가기능」의 분산조정

(2) 국가 최고직책은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장을 국가최고 직책으로 격상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
 - 김영남 추대사 :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
 - 헌법 제10조 :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
 - ※ 「국방위원회」 구성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
- 김정일은 당총비서겸 국방위원장으로 사실상 “국가의 최고 수위”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

○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

- 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 심의·승인, 헌법과 부문법 규정 해석, 법령·결정·지시의 폐지 및 정지, 내각 구성원 임명 또는 해임, 조약의 비준 등

○ 상임위원장(김영남)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

※ 종전 헌법의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상임위원장은 단지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국한

(4) 내각의 역할 강화

○ 종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추가

-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 받음.

○ 조직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감축

- 부총리 9명을 2명으로 축소
- 37개부서(11위, 22부, 1원, 1은행, 2국)를 31개부서(1위, 26성, 1원, 1은행, 2국)로 조성
- 특히 경제분야 32개부서를 23개로 통폐합

< 유사부서 통폐합 >

- 전력공업부+석탄공업부 → 전기석탄공업성
- 금속공업부+기계공업부 → 금속기계공업성
- 건설부+건재공업부+자재공급위 → 건설건재공업성
- 경공업위+지방공업부 → 경공업성
- 도시경영부+국토환경보호부+자원개발부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 분리부서 >

- 교통위원회 → 철도성, 육해운성

< 폐지부서 >

- 원유공업부
- 대외경제위원회 등

나. 인물개편

(1) 당·정간 역할 분리 경향

○ 내각내 당고위직 겸직자 감소(6인→2인)

- 홍성남총리(당정치국후보위원), 백학림사회안전상(당중앙
군사위원)만 겸직

(2) 새인물 대거 기용

○ 내각의 相 31인중 24인이 새인물

- 경제관련 相 23인중 16인

- 원로층인 부주석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신설)으로 후퇴

(3) 경제기술관료 부상

- 총리, 부총리 조창덕(전 채취공업부장), 부총리 곽범기(전 기계공업부장) 등 3명이 전원 경제전문가

(4) 국방위원들이 당고위직 겸직

- 위원 10명중 7명이 당중앙군사위원, 기타 道당책, 정치국 후보위원 겸직

(5) 주석단 서열 변경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총리의 서열이 과거 부주석(이종욱·박성철·김영주)보다 상위로 조정
- 국방위원회 위원(조명록·이을설·김일철·이용무)이 당비서(계응태·전병호·한성룡)보다 상위서열로 부상

-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시사

4. 종합 평가

가. 통치구조면에서 대외·대내업무를 분리

- 「국가수반」 없이 김정일은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만 맡고, 경제문제는 내각에,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
 - 김정일은 당·군을 장악하고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책임을 지게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나갈 전망

나. 대남·통일정책 업무, 당으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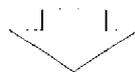
-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대남사업은 당이 전담할 것으로 전망

다. 경제난 타개 노력

- 경제관련 부서의 통폐합, 지방행정조직의 일원화,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수정 등을 통해 조직운용 및 경제효율성 제고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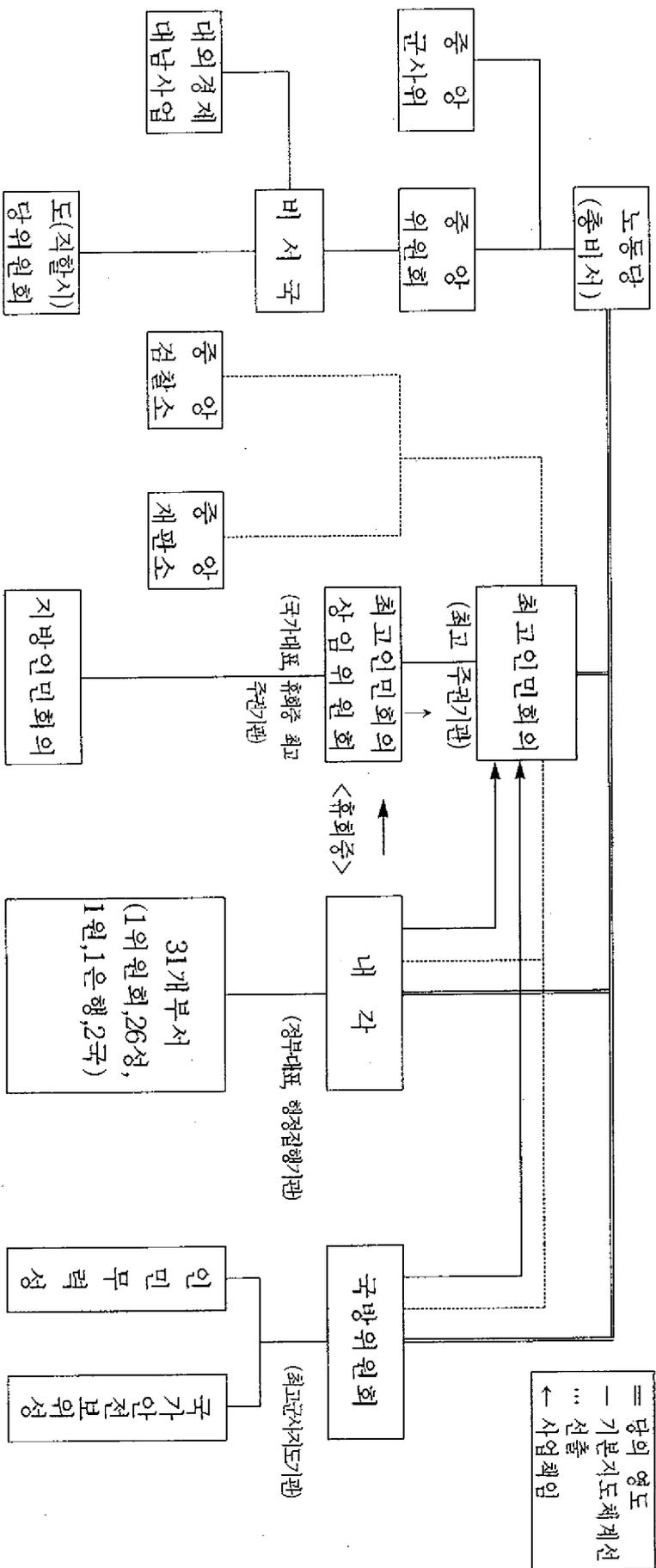
라. 김정일의 기존 통치행태 지속

- 김정일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상징화하면서 김일성의 유훈 관철만을 강조
- 김정일은 당·군을 장악한 가운데 은둔통치와 군부중심 통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



외형상의 『김정일시대 개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노선 및 통치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1) 권력기구 체계도



- 노동당(총비서 김정일)은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을 영도(헌법 제11조)
-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관사지도기관, 위원장(김정일)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헌법 제100조, 102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예 최고주권기관, 상임위원장(김영남)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헌법 제106조, 111조)
 - 외국 사신의 신임장 접수
-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총리(홍성남)는 정부를 대표(헌법 제117조, 120조)
- 사업책임 : 국방위원회 → 최고인민회의(헌법 제105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 최고인민회의(헌법 제116조)
- 내각 → 최고인민회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헌법 제125조)

<첨 부>

(2) 주석단 서열 비교

서열	김일성사망시 장의위원회('94.7.8)	김일성 4주기 추모식('98.7.8)	제10기대의원 투표 ('98.7.26)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98.9.5)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오진우(사망)	이종욱	이종욱	김정영
3	강성산	박성철	박성철	남남옥
4	이종성	김영남	김영남	옥철주
5	박성옥	김태호	김태호	철주록
6	김영주	계병을	김계병	영명설
7	김병영	전이조	김계전	이명을
8	김영남	이명복	한이조	김이명
9	최광(사망)	김영춘	양한이	이영용
10	계태호	한성룡	김양희	계전한
11	전병성	서형석	양희태	김양형
12	한성운	양석복	최김철	양최김
13	서김철	만남	홍성남	양최김
14	김철만	남립	최성남	양최김
15	최영림	남형	홍영석	양최김
16	최성남	형목	홍연국	양최김
17	홍원(사망)	연국	연국	양최김
18	양희섭	국태	연국	양최김
19	홍석형	남순	연국	양최김
20	연형목	남순	연국	양최김
21	연형목	순섭	연국	양최김
22	이선실	섭립	연국	양최김
23	이철수	립철	연국	양최김
24	김기남	철일	연국	양최김
25	김태엽	일현	연국	양최김
26	황장연(망명)	현서	연국	양최김
27	김중린	서신	연국	양최김
28	서관희(처형)	신혁	연국	양최김
29	김순용	혁철	연국	양최김
30	김환	철태	연국	양최김
31	김복신	태복	연국	양최김
32	김창운	복영	연국	양최김
33	김훈	영제	연국	양최김
34	김철태	제영	연국	양최김
35	공진기	영제	연국	양최김
36	공운박	제영	연국	양최김
37	박남문	영제	연국	양최김
38	진류미	제영	연국	양최김
39	류현준	영제	연국	양최김
40	현준	제영	연국	양최김

<첨 부>

(3) 제9기 제1차회의 김일성 시정연설 요지 (’90.5.24)

대내문제

<정 치 >

o 3대혁명노선 견지 및 당의 영도체제 강화

- 공화국 정부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 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한 우리 당의 총노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 것임.
-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대중을 튼튼히 묶어 세워 전체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끝까지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 제 >

o 과학기술 발전, 산업부문간 불균형 해소 촉구

- 기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함.
- 인민경제 부문간 균형 보장과 정상화를 통해 제3차 7개년계획 목표를 수행해야 함.
- 경공업 및 화학공업의 현대화를 통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증대하고 품질 향상운동을 적극 추진함.

< 사회 >

o 사상교양 강화 및 외래사조 유입 방지

- 사회주의 정권은 마땅히 불건전한 사상과 문화의 침식으로 부터 인민들을 보호하여야 하며 인민의 이익과 사회주의 위업을 침해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공동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함.
-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동요없이 사회주의 위업에 주인이 되어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겠음.

대외문제

o 현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투쟁으로 파악

-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부추켜 사회·정치적 파멸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음.

o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추진

- 자주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인민의 이익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대외정책을 세우고 변함없이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해 나갈 것임.

○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관계 및 경제·문화적 교류 확대

-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평등과 상호정신의 원칙에서 경제·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

대남 및 통일·대화문제

○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 마련

-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무력을 대폭 줄이며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북과 남사이에 자유왕래의 전면개방 실행

-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각계인사들의 방북을 환영하며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북반부 인민들이 남을 방문하는 데에도 제한없고 적극 보장할 것임.

○ 대결경쟁 지양 및 UN 동시가입 반대

-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대결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

○ 전민족적 대화와 통일전선 형성

- 모든 정치·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사상을 반영하는 전민족적 대화로 되어야 함.
-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할 것임.

<첨 부>

(4) 신·구헌법 조문 대비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1장 정 치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수 정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u>모든 근로인민의</u>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보 충
제2장 경 제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u>사회협동단체</u> 가 소유한다	보 충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u>중요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u> 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u>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u> 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협동 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 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 지·부림집승·농기구, 고 기배, 건물같은 것과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p>	<p>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 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 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p>	수 정
<p>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 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 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 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 택으로 이루어 진다.</p> <p>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 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 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 물도 개인수입에 속한다.</p>	<p>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 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 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 유는 ...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p> <p>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 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p>	일부삭제 및 보충 일부삭제 및 보충
<p>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 제는 ...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 이다.</p>	<p>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 제는 ... 조국의 융성번영 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p>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 하며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 <u>현대화</u> 하며	보 충
제33조 —	제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 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 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	일부신설
제3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 서 한다.	제36조 ...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수 정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기 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 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7조 국가는 ... <u>기업합영과 합 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 한다.</u>	보 충
제3장 문 화		
제4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 행하여 ... 높은 문화·기 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를 만들며	제40조 ... 높은 <u>문화·예술수준을</u>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수 정

구 현 법	신 현 법	비 고
<p>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p>	<p>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p>	삭 제
<p>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p>	<p>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p>	수 정
<p>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p>	<p>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p>	수 정
제4장 국 방		
<p>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기본 내용으로</p>	<p>제60조 국가는 ... 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p>	수 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68조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8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	삭 제
제75조	제75조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신 설
제7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	제8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 ※ 75조 신설로 조항 변경	추 가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있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1조 구 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부분과 합쳐서 81조로 변경	삭 제 수 정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 재산을 아끼고 ...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86조 … 조직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p>	---	삭 제
제6장 국가기구		
<p>제87조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p>	---	삭 제
<p>제88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p>	<p>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p>	수 정
<p>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p>제9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수정·보충한다. 2. <u>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u> 보충한다. 3. …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p>수 정</p> <p>삭 제</p> <p>삭 제</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0.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의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4.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p> <p>18.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 기관들의 사업정령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p> <p>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p>	<p>—</p> <p>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p> <p>16.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p> <p>—</p>	<p>삭 제</p> <p>수 정</p> <p>수 정</p> <p>수 정</p> <p>수 정</p> <p>삭 제</p>
<p>제92조</p> <p>정기회의는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u>가 소집한다.</p> <p>임시회의는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u>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p>	<p>제92조</p> <p>...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가 소집한다.</p> <p><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수 정</p>
<p>제94조</p> <p><u>의장은 회의를 집행하여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u></p>	<p>제94조</p> <p><u>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u></p>	<p>수정 및 삭제</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이 제출한다.</p>	<p>제95조 …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p>	수 정
<p>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p>	<p>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p>	수 정
<p>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p>	<p>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 위원회를 둔다.</p>	수 정
<p>제98조 최고인민회의 부문회의는 …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p>	<p>제98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p>	수 정
<p>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p>	<p>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p>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 설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이다.	상설회의 규정 삭제, 상임위원회 규정 신설
<p>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p>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p> <p>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들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꾼이 될 수 있다.</p> <p>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p>상설회의 규정 신설 및 보충</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이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p>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한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 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p>	<p>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p> <p>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 의 사업을 한다.</p> <p>10. 내각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p> <p>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재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p> <p>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p> <p>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p> <p>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p> <p>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p> <p>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p>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 며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 장, 소환장을 접수한다.</p> <p>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상무회의는 위원장, 부 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 한다.</p> <p>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 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 정한다.</p> <p>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p> <p>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삭 제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다.	제100조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 기관이다.	보 충
제11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02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보 충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	삭 제
—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국방부분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신 설
제5절 정무원	※ 정무원 삭제, 내각신설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수정 및 일부삭제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수 정
<p>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p>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 경제기관 기업을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p>신 설</p> <p>신 설</p> <p>수 정</p> <p>수 정</p> <p>보 충</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p> <p>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p> <p>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p> <p>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신 설</p> <p>수 정</p> <p>수 정</p>
<p>—</p>	<p>제120조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p>	<p>신 설</p>
<p>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갖는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으로 구성한다.</p>	<p>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p>	<p>수 정</p>
<p>제128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 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p>	<p>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p>수 정</p>
<p>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수 정</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130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p>	<p>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p>	수 정
<p>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한다.</p>	<p>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p>	수 정
<p>제132조 정무원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p>	<p>제127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 기관이다.</p>	수 정
-	<p>제128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p>	신 설
-	<p>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신 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신 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일부신설
제13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형태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5. 해당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을 선거 또한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4조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수 정 삭 제 삭 제
제139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37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수 정

구 현 법	신 현 법	비 고
<p>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u>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u></p>	<p>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p>	<p>일부삭제</p>
<p>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 기관이다.</p>	<p>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 기관이며, <u>해당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u></p>	<p>보충</p>
<p>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p>	<p>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p>	<p>수정</p>
<p>제143조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u>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u>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p>	<p>제141조 4. 해당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u>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u></p>	<p>수정 수정 삭제</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p> <p>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p> <p>—</p> <p>—</p> <p>—</p>	<p>11. 하급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p> <p>—</p> <p>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p> <p>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p> <p>8.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p> <p>9. 해당기관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p>	<p>수 정</p> <p>삭 제</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p>	<p>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p>	<p>신 설</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	<p>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신 설
<p>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	삭 제
—	<p>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신 설
<p>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p>	<p>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p>	수정 및 보충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	삭 제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p>	<p>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검찰관련 규정이 재판소 규정 앞으로 이동</p>	
<p>제160조 ... <u>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u></p>	—	삭 제
<p>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u>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u>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p>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 앞에 책임진다.</p>	수정 및 일부삭제
<p>제165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u> 가를 감시한다.</p>	<p>제150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u>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u> 가를 감시 통제한다.</p>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수 정

<첨 부>

(5) 개정헌법全文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셨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만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면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상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위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면적의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세계 정치원로로서 자주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불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사상이론과 영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었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 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노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2 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채신기관과 중요공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 기술발전과 인민경제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벌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위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기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 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기 이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기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혁명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철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이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4 장 국 방

-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체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 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 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낭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 6 장 국가 기구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식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3 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수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 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 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 5 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
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
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상의 법령, 정령,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기관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7 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 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령·결정·지시, 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통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7 장 국장 · 국기 · 국가 ·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따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응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 달린쪽 흰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